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3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7.

발 의 자:김승원・이규민・정찬민

김진표 · 임호선 · 박 정

전용기 · 오영환 · 민형배

전재수 · 박광온 · 김남국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한다)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방법 등에 관하여"를 "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례절차의 지원 등에"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	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
	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
	전에 장기적・지속적인 친분관
	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
	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
	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
	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
	<u>할 수 있다.</u>
<u>②</u> 시장등은 <u>제1항</u> 에 따라 무	<u>③</u> <u>제1항 및 제2항</u>
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	
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	
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	
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	
	<u>.</u>
<u>③</u>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	<u>4</u>
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	
후의 처리 <u>방법 등에 관하여</u>	<u>방법 및 제2항에 따른</u>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장례절차의 지원 등에
정한다.	